

## (사)한국연극협회 회원자격규정

2005. 01. 08. 개정  
2005. 10. 22. 개정  
2006. 07. 29. 개정  
2007. 05. 17. 일부개정  
2007. 09. 27. 일부개정  
2009. 07. 25. 일부개정  
2011. 02. 19. 일부개정  
2014. 09. 27. 일부개정  
2017. 10. 30. 일부개정  
2018. 08. 17. 일부개정  
2019. 06. 01. 일부개정  
2020. 10. 27. 일부개정  
2021. 04. 19. 일부개정  
2021. 10.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극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입회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극단)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지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입회요건)**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개인은 **만** 20세 이상으로 첫 작품을 공연한 날로부터 **만** 2년 이상 연극 활동을 하고 4개 공연작품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단, 학생극 단체의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원자격 별첨규정 참조**) **[2021.10.13. 일부개정]**
- ② 단체는 창단 후 2년 이상 활동한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에 해당지역에서 4개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고, 최근 **만** 1년 이내의 1개 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로 협회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단체회원자격 별첨규정**)

정 참조) [2021.10.13. 일부개정]

- ③ 뮤지컬 작품 중심으로 공연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도 입회 가능하다. [2021.04.19.개정]

### 제5조(절차)

- ①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지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부가 설치된 지회일 경우에는 지부동의를 얻어 지부를 경유하여 신청한다. 단, 지부 미설치 지역은 지회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며 인준 후 지회의 무소속 개인회원으로 입회한다.
  - 1. 개인입회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4. 지부장 동의서(입회신청서의 직인으로 같음)
  - 5.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1부
- ②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지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부가 설치된 지회일 경우에는 지부동의를 얻어 지부를 경유하여 신청한다. 단, 지부 미설치 지역은 지회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며 인준 후 지회의 무소속 단체회원(극단)으로 입회한다.
  - 1. 단체입회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대표자의 이력서(이력을 증빙할 자료 포함) 1부
  -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4. 소속회원(단원)명단 1부
  - 5. 회원의 입단승락서 각 1부
  - 6. 단체연혁(증빙자료 포함) 1부
  - 7. 지부장 동의서(입회신청서의 직인으로 같음)
  - 8.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1부

**제6조(심의위원회)** 각 지회의 신입회원(개인 및 단체) 심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1.04.19.개정]

### 제7조(심의)

- ① 심의위원회는 구비서류와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입회 여부를 심의하고 가.부 표시 후 서명하여 지회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면접 시에는 입회하고자하는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직접 면접에 응해야 한다.

- ③ 지회장은 지회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가입회원의 인적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등록)**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필한 신입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와 1년 회비를 선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인준은 자동 취소되고 1년간 재입회할 수 없다.

**제9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회 및 지회,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자격 유지)**

-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1년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기간 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단, 지회, 지부사무국은 자격정지개시일 1개월 전에 해당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 ② 회원은 타 지회, 지부, 단체에 복수 가입할 수 없고 소속지회, 지부, 단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소속되어 있던 지회, 지부,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단, 변경 후 만 1년 경과후 변경이 가능하다.)
- ③ 본 협회를 탈퇴한 회원은 2년, 제명된 회원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2021.04.19. 개정]
- ④ 삭제 [2021.04.19.]
- ⑤ 본 협회 회원으로서 4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제명 처리되며 회비미납제명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지회 지부사무국은 제명예정일 1개월 전에 해당 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제명은 지회이사회의 의결과 본 협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21.04.19. 개정]
- ⑥ 본 협회 회원단체로써 규정에 명시된 보유회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는 그 자격을 정지시키며 자격정지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자격정지상태의 단체는 본 협회 및 지회지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격정지 상태가 5년 이상인 단체는 제명처리 한다. 지회지부사무국은 해당단체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제명은 지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04.19. 개정]

**제11조(회비)**

- ① 신입회원의 입회비 14만원, 연회비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회원 가입 월에 따라 분기별로 차감된다.~~ 단, 해당년도 제4차 이사회(4/4분기)를 통해 인준된 신입회원의 경우 익년도로 같음한다. [2021.10.13. 일부삭제 및 개정]

- ② 회원은 회비(입회비 포함)를 소속지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회원은 개인이 납부하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은 단체대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1.10.13. 일부개정]
- ③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면제 한다.
- ④ 연회비는 매년 마지막 본 협회이사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단, 지회는 지회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021.04.19. 본항 신설]

**제12조(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할 때에는 소속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지부가 설치된 지회는 지부장 경유)하고 지회장은 이를 소정양식에 의거 본 협회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해외지부회원)** 해외지부 소속회원은 특별회원으로서 본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입회는 해당지부 이사회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입회하며 지부가 자치적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05. 01. 08.)

- 1.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2.)

-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7. 29.)

-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7.)

-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9. 29.)

-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25.)

-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2. 19.)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2. 25.)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9. 27.)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30.)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17.)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01.)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7.)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19.)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3.)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